





## 규정

## 평생교육원 운영 규정

문서번호	TWP-D101		
제정일자	1998. 03. 01.		
개정일자	2018. 05. 04.		
내정번호	3	페이지	2/7

	규정	문서번호	TWP-D101
	평생교육원 운영 규정	제정일자	1998. 03. 01.
		개정일자	2018. 05. 04.
		개정번호	3
		페이지	3/7

[전면 개정 2018.05.04.]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교육원은 대학이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평등과 평생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설립목적)** <삭제 2018.05.04.>

**제3조(위치)** 교육원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26의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.) 내에 둔다.

**제4조(과정설치)** 교육원의 교육과정은 정부의 인허가 조건 및 관계법령과 정부정책에 의한 이 대학교의 필요에 따라 각 과정을 설치한다.

## 제2장 조직과 인사

**제5조(조직의 구성)** ① 교육원에는 원장과 각 과정별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를 둔다.  
 ② 원장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며 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한다.  
 ③ 교육원에는 센터의 행정업무를 위해 직원을 둘 수 있으며, 원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업무를 수행한다.

**제6조(주임교수)** ① 교육원에는 교육과정별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.  
 ② 주임교수는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**제7조(교원)** ① 교원은 이 대학교의 전임교원과 외부전문인사를 겸임 또는 시간강사로 한다.  
 ② <삭제 2018.05.04.>

**제8조(사무직원)** <삭제 2018.05.04.>

	규정	문서번호	TWP-D101
		제정일자	1998. 03. 01.
	평생교육원 운영 규정	개정일자	2018. 05. 04.
		개정번호	3
		페이지	4/7

### 제3장 운영위원회

**제9조(위원회 구성)** ① 교육원은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‘운영위원회’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7인의 교내·외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전문분야 경력자를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**제10조(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원장의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 제3항의 경우에는 자문에 한한다.

1. 교육원의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교과 및 강좌의 개설과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
3. 교육원 운영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
4. 학습비, 수료 및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
5. 기타 교육원 운영과 학습생 상별 등에 관한 사항

**제11조(소집과 의결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### 제4장 입학과 등록 등

**제12조(입학자격)** 교육원에 입학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,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 다만, 학력과 관련하여 학점인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정한다.

**제13조(등록시기)** 교육원의 학습 및 등록 시기는 각 교육과정별 일정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.

**제14조(전형방법)** ① 교육원의 학습자 선발은 각 교육과정별 입학원서 접수순과 학습 수용능력 등 서류전형을 기초로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습자 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‘전형위원회’를 설치, 운영할 수 있다..

	<b>규정</b> <b>평생교육원 운영 규정</b>	문서번호	TWP-D101
		제정일자	1998. 03. 01.
		개정일자	2018. 05. 04.
		개정번호	3
		페이지	5/7

**제15조(등록과 반환)** ① 교육원의 학습자는 각 과정별로 소정의 학습비를 등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학습비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를 따른다.

**제16조(장학금)** ① 학습생활의 수범과 학업성적이 우수한자에 대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동일 산업체 근로자로서 직장 단위별로 20명 이상의 교육생이 일시등록을 할 경우에는 그 산업체에 대하여 등록금의 일부감면액을 장학금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다.

③ 기타 교육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습자중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## 제5장 교육과정의 운영

**제17조(교육과정과 운영)** ① 교육원의 교육과정은 수시로 정하며 그 운영은 각 과정별로 추진한다.

② <삭제 2018.05.04.>

③ 주임교수는 당해 교육과정에 대한 교과편성 및 운영을 총괄하.

**제18조(학습기간 및 모집)** ① 교육원의 학습기간은 각 과정별로 결정하고 학습생은 수시로 모집한다.

② 학습생 모집에 필요한 홍보는 각 과정별 정규 소속전공 또는 교육원의 주관으로 활동, 모집하며 원장은 이를 총괄한다.

**제19조(교육평가)** 교육원은 각 과정별 교과목 이수자에 대하여 학습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.

**제20조(수료와 수료증)** 교육원은 교육과정별로 설치된 소정의 강좌를 70%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하여 그 수료(또는 졸업)를 인정하고 수료증(또는 졸업증서)을 수여한다. 다만, 자격취득과정 등 타 기관과 연계하여 설치된 소정의 강좌는 기 기관에서 요구하는 이수수준에 대하여 그 수료(또는 졸업)를 인정하고 수료증(또는 졸업증)을 수여한다.

	<b>규정</b> <b>평생교육원 운영 규정</b>	문서번호	TWP-D101
		제정일자	1998. 03. 01.
		개정일자	2018. 05. 04.
		개정번호	3
		페이지	6/7

## 제6장 포상과 징계

**제21조(포상)** 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다른 학습생에 모범이 되며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을 할 수 있다.

**제22조(징계)** <삭제 2018.05.04>

## 제7장 학사재정

**제23조(회계연도)**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이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**제24조(수입원)** 교육원의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학습자의 수강료 (입학금 포함)
2. 수탁 교육의 훈련 지원금 (위탁훈련시)
3. 기타 수입 또는 대학 보조금

**제25조(강사료)** 교육원의 출강에 따른 강사료 지급 기준은 따로 정하여 지급한다.

## 제8장 보칙

**제26조(보칙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방침에 따른다.

### 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	규정	문서번호	TWP-D101
		제정일자	1998. 03. 01.
	평생교육원 운영 규정	개정일자	2018. 05. 04.
		개정번호	3
		페이지	7/7

### 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